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년 1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 12. 4.

1. 개정 이유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초산에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일반 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폭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 1)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미량의 안식향산에 대한 천연유래로 인정 필요
- 2) 일반원칙 중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안 I. 3. 5) (4))
- 3) 천연유래 입증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민원 해소

나. 초산에틸 등 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식품첨가물 사용 필요성 등을 반영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 2) “초산에틸”을 식용유지 추출 및 다류 또는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초산에틸)
- 3) “이소프로필알콜”을 식용유지 추출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이소프로필알콜)
- 4) “니신”을 두류가공품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니신)
- 5) “소브산” 및 그 염류를 식물성크림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6) 국제기준과 조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

다. 식품용 살균제 관련 사용기준 정비

- 1) 식품용 살균제의 안전한 사용 및 오용 방지를 위한 사용기준 정비필요

- 2) 식품용 살균제를 직접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정(안 II. 2. 4) 및 8))
- 3) 식품용 살균제의 안전한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및 민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용어 정의 추가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조성분 규정 명확화 등 제조기준 개선(안 I. 2. 5) 및 III. 1. 1), III. 1. 2) (4))
-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선(안 III. 2. 1)~4))
-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및 민원이해도 제고

마.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시험법 및 폭신아황산 시액의 제조방법 개선

- 1)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등 개선 필요
- 2)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개정(안 II. 4. 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폴리브덴산나트륨, 5'-이노신산이나트륨, 제삼인산칼슘, 파프리카추출색소, 푸마르산 제일철,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효모)

3) 밀납 등의 성분규격 시험법에 사용되는 폭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
개정(안 V. 2. 폭신아황산시액)

4)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0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
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2.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기구등”이라
한다)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I. 3. 5)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식향산으로서 0.02g/kg 이하로 검출된 경우(다만,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식품의 경우, 전체 원료 중 동물성 원료를 제외한 원료의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II. 2. 4)의 “섭취하는”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으로 한다.

II. 2.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살균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품목별 사용기준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침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제나 다른 살균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4. 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의 확인시험 (2) 중 “1→20”을 “1→100”으로 한다.

II. 4. 가. 폴리브덴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 암모늄 중 “펜타시아노니트로실철(III)나트륨”을 “펜타시아노니트로실철(III)산나트륨”으로 한다.

II. 4. 가. 5'-이노신산이나트륨의 확인시험 (3) 중 “1→20”을 “1→100”으로 한다.

II. 4. 가. 제삼인산칼슘의 정량법 중 “적정한다”를 “적정한다(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으로 한다.

II. 4. 가.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 잔류용매 ② 시약 중 “세정제와

항기포제(Detergent & antifoam)”를 “소포제”로 하고, “대조액 B : 물에 0.63%v/w의 아세톤을 함유하는 액”을 “대조액 B : 아세톤 5,000ppm(w/v)을 함유하는 용액”으로 하며, ③ 표준용액 제조 중 “시험표준용액A”를 “표준용액A”로 하고, “50~2,500ppm”을 “50~2,500ppm(w/v)”로 하며, “2,500ppm”을 “2,500ppm(w/v)”로 하고, “6,300ppm”을 “5,000ppm(w/v)”로 하며, ⑤~⑦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험조작 : 수소이온화검출기가 장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조작조건

칼럼 : DB-624(30m×0.25mm×1.4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검출기 : 수소이온화검출기(FID)

칼럼온도

메탄올을 제외한 모든 용매들 : 38℃에서 3.8분간 유지시킨 후 40℃/min의 비율로 120℃까지 승온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킨다.

메탄올 : 80℃에서 2분간 유지시킨 후 50℃/min의 비율로 100℃까지 승온시킨 다음 2분간 유지시킨 후 다시 110℃까지 1℃/min의 비율로 110℃까지 승온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킨다.

주입구 온도 : 220℃

검출기 온도 : 220℃

이동상 기체 및 유량 : 질소, 1 mL/min

주입모드 : split ratio(10:1)

주입량 : 1 µL

⑥ 검량선의 작성

메탄올을 제외한 모든 잔류용매들 : 각 표준용액의 표준물질(헥산,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염화메틸렌, 삼염화메틸렌)과 내부표준물질(시클로헥산)의 면적비를 Y축으로 하고 각 표준용액의 농도(µg/mL)를 X축으로 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다.

메탄올 : 메탄올과 내부표준물질(아세톤)의 면적비를 Y축으로 하고 메탄올의 농도(µg/mL)를 X축으로 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다.

⑦ 계 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용매의 농도를 계산한다.

$$\text{잔류용매 (메탄올 제외)(ppm)} = C \times \frac{V}{SA} \times \frac{PSis}{PS} \times \frac{PA}{PAis}$$

- C : 표준용액의 농도(µg/mL)
- V : 시험용액의 최종 부피(mL)
- SA : 검체의 채취량(g)
- PS : 표준용액 중 용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 PA : 시험용액 중 용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 PSis : 표준용액 중 내부표준물질(시클로헥산)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 PAis : 시험용액 중 내부표준물질(시클로헥산)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text{메탄올(ppm)} = C \times \frac{V}{SA} \times \frac{PSis}{PS} \times \frac{PA}{PAis}$$

- C : 표준용액의 농도(µg/mL)
- V : 시험용액의 최종 부피(mL)
- SA : 검체의 채취량(g)
- PS : 표준용액 중 용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 PA : 시험용액 중 용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 PSis : 표준용액 중 내부표준물질(아세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 PAis : 시험용액 중 내부표준물질(아세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II. 4. 가. 푸마르산제일철의 정량법 중 “황색이 나타날 때까지”를 “황색이 사라질 때까지”로 한다.

II. 4. 가. 향신료올레오레진류의 순도시험 (3) 잔류용매 중 “삼염화에틸”을 “삼염화에틸렌”으로 한다.

II. 4. 가. 효모 가. 건조효모, 나. 생효모, 다. 액상효모의 각각의 순도시험 중 (1) 활성화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상효모에 따라 최적 생육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제시하는 온도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할 수 있다.

II. 5. 가. 니신의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니신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니신의 사용량은

1. 가공치즈 : 0.250g/kg 이하
2. 두류가공품 : 0.025g/kg 이하

II. 5. 가. 소브산 사용기준 중 14의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 상에 한함)”을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 식물성 크림”으로 한다.

II. 5. 가. 소브산칼륨 사용기준 중 14의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을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 식물성크림”으로 한다.

II. 5. 가. 소브산칼슘 사용기준 중 14의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을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 식물성크림”으로 한다.

II. 5. 가. 이소프로필알콜의 사용기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이소프로필 알콜로서 잔류량)

II. 5. 가. 초산에틸의 사용기준에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 로서 잔류량)

5. 다류 및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III.의 제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한다.

III. 1. 1) 제조성분 일반 중 “식품원료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를 “식품원료로 인정된 경우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보조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III. 1. 2)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품목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품목이거나 등재된 품목을 혼합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III. 2. 일반사용기준의 제목 외의 부분을 1)로 하고, 1)의 본문(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기구등”이라 한다)의”를 “기구등의”로 하며, III. 2. 2)부터 4)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 등에 분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세척제나 다른 살균·소독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V. 시약·시액·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2. 시액의 폭신아황산시액 중 “물 500mL에”를 “물 50mL에”로 한다.

부칙<제2020-000호, 2020. .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첨가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이하 “식품첨가물등”이라 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 3. 5)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소분·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완료되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검사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 3. 5)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I. 총칙</p> <p>1. 목적(생 략)</p> <p>2. 용어의 정의</p> <p>1)~4) (생 략)</p> <p><신 설></p>	<p>I. 총칙</p> <p>1. 목적(현행과 같음)</p> <p>2. 용어의 정의</p> <p>1)~4) (현행과 같음)</p> <p>5)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기구등”이라 한다)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p>
<p>3. 일반원칙</p> <p>1)~5) (생 략)</p> <p>(1)~(3) (생 략)</p> <p><신 설></p>	<p>3. 일반원칙</p> <p>1)~ 5)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안식향산으로서 0.02g/kg 이하로 검출된 경우(다만,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식품의 경우, 전체 원료 중 동물성 원료를 제외한 원료의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p>
<p>II.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p>	<p>II.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p>

현 행	개 정 (안)
<p>1. 제조기준 (생 략)</p> <p>2. 일반사용기준</p> <p>1)~3) (생 략)</p> <p>4)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7) (생 략)</p> <p><신 설></p>	<p>1. 제조기준 (현행과 같음)</p> <p>2. 일반사용기준</p> <p>1)~3) (현행과 같음)</p> <p>4) ----- ----- ----- --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 -----.</p> <p>5)~7) (현행과 같음)</p> <p>8) 살균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품목별 사용기준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침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제나 다른 살균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품목별 사용기준</p> <p>가. 식품첨가물</p> <p>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Disodium 5'-Ribonucleotide</p>	<p>4. 품목별 사용기준</p> <p>가. 식품첨가물</p> <p>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Disodium 5'-Ribonucleotide</p>
<p>정의~성상 (생 략)</p> <p>확인시험</p>	<p>정의~성상 (현행과 같음)</p> <p>확인시험</p>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2) 이 품목의 수용액(1→20) 5mL에 마그네시아시액 2mL를 가하면 침전이 생기지 않으나 이에 질산 7mL를 가하여 10분간 끓인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1) (현행과 같음) (2) -----1→100
몰리브덴산나트륨 Sodium Molybdate	몰리브덴산나트륨 Sodium Molybdate
함량~확인시험 (생 략) 순도시험 (1)~(2) (생 략) (3) 암모늄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물 140mL 및 산화마그네슘 2g을 가하여 증류장치에 연결한다. 100mL 플라스크에 흡수액으로 붕산용액(1→200) 20mL를 넣고 증류장치 냉각기의 끝을 흡수액	함량~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2) (현행과 같음) (3) -----

현 행	개 정 (안)
에 담그고 분당 5~7mL가 유출되도록 가열온도를 조절하여 증류액 60mL를 받는다. 냉각기의 아래 끝은 소량의 물로 세척하여 넣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대조액은 암모늄 표준용액(이 액 1mL는 암모늄 0.01mg 함유) 1.0mL를 증류플라스크에 넣은 다음 이하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증류액 60mL를 받는다. 냉각기의 아래 끝은 소량의 물로 세척하여 넣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30mL와 대조액 30mL를 각각 네슬러관에 넣고 페놀니트로프로시드나트륨시액 6mL씩을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차아염소산나트륨·수산화나트륨시액 4mL 및 물을 가하여 50mL씩으로 하고 섞어준 후 60분간 방치한 다음 색을 비교하였을 때, 시험용액의 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0.001% 이하).	-----
시 액	-----

현 행	개 정 (안)
<p>기체크로마토그래피 조작조건</p> <p>칼럼 : DB-624(30m×0.25mm×1.4μm)</p> <p>또는 이와 동등한 것</p> <p>검출기 : 수소이온화검출기(FID)</p> <p>칼럼온도 : 시험용액A(메탄올을 제외한 모든 용매들) : 38℃에서 3.8분간 유지시킨 후 40℃/min의 비율로 120℃까지 승온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킨다.</p> <p>시험용액B(메탄올에 한함) : 60℃에서 4분간 유지시킨다.</p> <p>주입구 온도 : 220℃</p> <p>검출기 온도 : 220℃</p> <p>이동상 기체 및 유량 : 질소, 1 μL/min</p> <p>주입모드 : split ratio(10:1)</p> <p>⑥ 검량선의 작성 : 미리 알고 있는 톨루엔 중의 시클로헥산과 용매들의 혼합물을 가스크로마토</p>	<p>기체크로마토그래피 조작조건</p> <p>칼럼 : DB-624(30m×0.25mm×1.4μm)</p> <p>또는 이와 동등한 것</p> <p>검출기 : 수소이온화검출기(FID)</p> <p>칼럼온도</p> <p>메탄올을 제외한 모든 용매들 : 38℃에서 3.8분간 유지시킨 후 40℃/min의 비율로 120℃까지 승온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킨다.</p> <p>메탄올 : 80℃에서 2분간 유지시킨 후 50℃/min의 비율로 100℃까지 승온시킨 다음 2분간 유지시킨 후 다시 110℃까지 1℃/min의 비율로 110℃까지 승온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킨다.</p> <p>주입구 온도 : 220℃</p> <p>검출기 온도 : 220℃</p> <p>이동상 기체 및 유량 : 질소, 1 mL/min</p> <p>주입모드 : split ratio(10:1)</p> <p>주입량 : 1 μL</p> <p>⑥ 검량선의 작성</p> <p>메탄올을 제외한 모든 잔류용매들 : 각 표준용액의 표준물질(헥산,</p>

현 행	개 정 (안)
<p>그래프에 주입함으로써 용매들의 이미 알려진 비율에 대한 검출기의 반응을 측정한다. 톨루엔 중의 시클로헥산과 용매의 피크는 분석에서 나타난 시료의 피크와 유사한 크기이어야 한다. 시클로헥산에 따라서 용매들의 면적을 계산하고 검량계수 F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p> $F(\text{용매}) = \frac{\text{wt\% 용매}}{\text{wt\% 시클로헥산}} \times \frac{\text{시클로헥산 피크의 면적}}{\text{용매 피크의 면적}}$ <p>시클로헥산(내부표준물질) 회수율에 따라 비교할 때, 올레오레진 검체로부터의 메탄올을 제외한 헥산,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의 회수율은 80~120%이어야 한다.</p> <p>또한, 아세톤(내부표준물질) 회수율에 따라 비교할 때, 올레오레진 검체로부터의 메탄올의 회수율은 80~120%이어야 한다.</p> <p>⑦ 계 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잔류용매의 농도를 계산한다.</p>	<p>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염화메틸렌, 삼염화메틸렌)과 내부표준물질(시클로헥산)의 면적비를 Y축으로 하고 각 표준용액의 농도(μg/mL)를 X축으로 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다.</p> <p>메탄올 : 메탄올과 내부표준물질(아세톤)의 면적비를 Y축으로 하고 메탄올의 농도(μg/mL)를 X축으로 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다.</p> <p>⑦ 계 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용매의 농도를 계산한다.</p>

현행	개정(안)
$\text{잔류용매 (메탄올 제외)} = \frac{50 \times F(\text{용매}) \times 100}{\text{용매의 \% 회수율}} \times \frac{\text{용매피크의 면적}}{\text{시클로헥산 피크의 면적}}$ <p>50은 분석에 사용된 검체 올레오레진 50g과 관련된 내부표준물질 시클로헥산의 ppm 농도이다.</p> $\text{메탄올} = \frac{100 \times F(\text{메탄올}) \times 100}{\text{메탄올의 \% 회수율}} \times \frac{\text{메탄올피크의 면적}}{\text{아세톤피크의 면적}}$	$\text{잔류용매 (메탄올 제외)} = C \times \frac{V}{SA} \times \frac{PSis}{PS} \times \frac{PA}{PAis}$ <p>(ppm)</p> <p>C : 표준용액의 농도(μg/mL) V : 시험용액의 최종 부피(mL) SA : 검체의 채취량(g) PS : 표준용액 중 용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PA : 시험용액 중 용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PSis : 표준용액 중 내부표준물질(시클로헥산)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PAis : 시험용액 중 내부표준물질(시클로헥산)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p> <hr/> $\text{메탄올 (ppm)} = C \times \frac{V}{SA} \times \frac{PSis}{PS} \times \frac{PA}{PAis}$ <p>C : 표준용액의 농도(μg/mL) V : 시험용액의 최종 부피(mL) SA : 검체의 채취량(g) PS : 표준용액 중 용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PA : 시험용액 중 용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PSis : 표준용액 중 내부표준물질(아세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 PAis : 시험용액 중 내부표준물질(아세톤)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p>
<p>* 100은 분석에 사용된 검체 올레오레진 50g과 관련된 내부표준물질 아세톤의 ppm 농도이다.</p>	
<p>푸마르산제일철 Ferrous Fumarate</p> <p>함량~건조감량 (생략) 정량법 이 품목 약 500mg을 정밀히</p>	<p>푸마르산제일철 Ferrous Fumarate</p> <p>함량~건조감량 (현행과 같음) 정량법 -----</p>

현행	개정(안)
<p>달아 50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다음 염산 (2→5) 25mL를 가하여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이에 염화제일주석이수화물 5.6g을 염산(3→10) 50mL에 녹인 용액을 가하여 <u>황색이 나타날 때까지</u> 가해주고 이에 2mL를 더 가한 다음 실온에서 식히고 염화제이수은시액 8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후 물 200mL, 황산(1→2) 25mL, 인산 4mL를 가해주고 o-페난트로린 시액을 가하여 0.1N 황산제이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p>	<p>황색이 사라질 때까지 -----</p>
<p>향신료올레오레진류 Spice Oleoresins</p> <p>정의~확인시험 (생략) 순도시험 (1)~(2) (생략)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과프리 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u>삼염화에틸렌</u> 30ppm 이하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p>	<p>향신료올레오레진류 Spice Oleoresins</p> <p>정의~확인시험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2) (생략) (3) ----- -----, <u>삼염화에틸렌</u> -----</p>

현행	개정(안)
아세톤 30ppm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ppm 이하 메탄올 50ppm 이하 핵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 ----- ----- -----
<p style="text-align: center;">효모 Yeast</p> <p>정의 (생략) 가. 건조효모 성상 (생략) 순도시험 (1) 활성 : 이 품목 5g을 10% 설탕용액 50mL에 가하여 35~40℃로 가온할 때, 2시간 30분 이내에 가스가 발생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2)~(6) (생략) 나. 생효모 성상 (생략) 순도시험 (1) 활성 : 이 품목 5g을 10% 설탕용액 50mL에 가하여 30~35℃로 가온할 때, 1시간 이내에 가스가 발생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효모 Yeast</p> <p>정의 (현행과 같음) 가. 건조효모 성상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 ----- ----- <u>다만, 액상효모에 따라 최적 생육 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제시하는 온도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할 수 있다.</u></p> <p>(2)~(6) (현행과 같음) 나. 생효모 성상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 ----- -----</p>

현행	개정(안)						
<p><u><단서 신설></u></p> <p>(2)~(3) (생략) 다. 액상효모 성상 (생략) 순도시험 (1) 활성 : 이 품목 5g을 10% 설탕용액 50mL에 가하여 30~35℃로 가온할 때, 1시간 이내에 가스가 발생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2)~(3) (생략)</p> <p>5. 품목별 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아래의 식품첨가물은 해당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사용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품목명</td> <td style="width: 33%;">사용기준</td> <td style="width: 33%;">주용도</td> </tr> </table>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p><u>다만, 액상효모에 따라 최적 생육 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제시하는 온도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할 수 있다.</u></p> <p>(2)~(3) (현행과 같음) 다. 액상효모 성상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 ----- ----- <u>다만, 액상효모에 따라 최적 생육 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제시하는 온도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할 수 있다.</u></p> <p>(2)~(3) (현행과 같음)</p> <p>5. 품목별 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품목명</td> <td style="width: 33%;">사용기준</td> <td style="width: 33%;">주용도</td> </tr> </table>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품목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품목이거나 등재된 품목을 혼합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p>2. 일반사용기준</p> <p>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기구등”이라 한다)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개별품목에서 정해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살균·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p> <p><신 설></p>	<p>2. 일반사용기준</p> <p>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 등의 ----- ----- ----- ----- -----</p> <p>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 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 등에 분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세척제나 다른 살균·소독제 등과 혼합하여</p>

현 행	개 정 (안)
	<p>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V. 시약·시액·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p> <p>1. 시약 (생 략)</p> <p>2. 시액</p> <p>강초산제이동시액 ~ 포린시액 (생 략)</p> <p>폭신아황산시액 폭신 0.5g을 열탕 300mL에 녹이고 식힌 다음 이에 잘 저어 섞으면서 무수아황산나트륨 5g을 물 500mL에 녹인 액을 가하여 다시 저어 섞으면서 염산 5mL를 가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여 5시간 방치한다. 차광한 용기에 넣어 찬 곳에 보존한다.</p>	<p>V. 시약·시액·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p> <p>1. 시약 (현행과 같음)</p> <p>2. 시액</p> <p>강초산제이동시액 ~ 포린시액 (현행과 같음)</p> <p>폭신아황산시액 ----- ----- ----- ----- 물 50mL에 ----- -----</p>